



The Financial Insurance Magazine

January 2018

Vol. 2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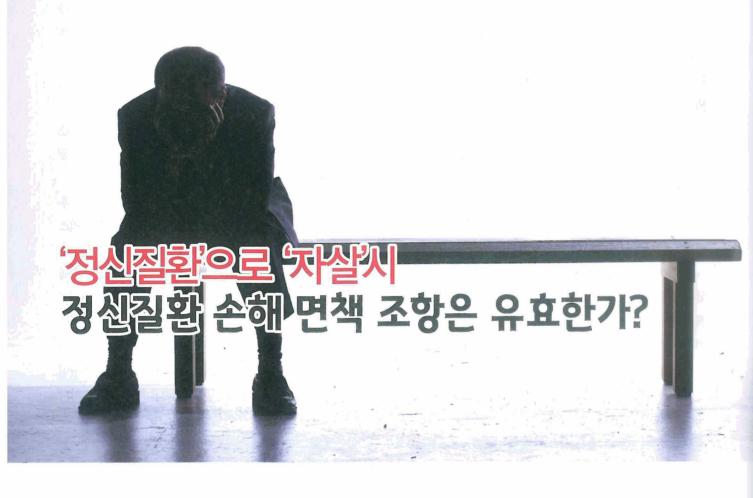
# '황금 운' 거머쥘 '걔띠 독자'만나다

"황금 개띠 해 더 빛난다"··· 2018년 새해, 나의 재무목표는?

'新장해분류표' 임박··· '3% 이상 질병·상해후유장해' 재조명 '독이 든 성배' 가상화폐 투자 광풍··· 사이버종합보험시장 커질까? 간편심사보험, '3·2·5 원칙' 줄파괴··· 3개월前 수술해도 "특별인수" 해외—국내 보험사 '일대일 자매결연'으로 WIN—WIN 新사회리스크 등장"··· '엄동설한' 에 증가하는 "고독사"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 면책조항의 유효성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34956 판결 (파기환송)

### [사실관계]

- 망인C(이하 '망인'이라 함)는 원고(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본 인으로 하고 사망 시 수익자를 본인의 모친(피고)으로 하는 '무배당 하이라이프 퍼펙트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다.
- 위 보험의 「보상하는 손해」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인해 생긴 손해다. 반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① 피보험자의 고의 ② 피보험자의 자살 ③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이 포함돼 있다.
- 한편, 위 보험약관(표준약관)의 면책조항은 2010. 4. 1. 개정 됐다. 개정안은 ① '피보험자의 고의'에 단서를 두어 「다만, 피보험자 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

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라고 규정했다. 또한 위 면책조항 ②와 ③은 삭제됨.

- 망인은 보험기간 중 주거지 안방 장롱 문짝에 스카프로 목을 매어 사망했다.
- 망인의 모친(피고)은 망인이 극심한 우울증 등으로 인해 진지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고의성이 없어 보험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

이에 대해 원고(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인 망인이 고의로 자살한 것이므로 면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렇지 않더라도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이 독립된 면책사유인데, 망인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살한 이상 위 정신질환 면책약관에 따라서도 면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점에 의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 제1심 울산지법 2014. 9. 17. 선고 2013가합8614(본 소), 2014가합3173(반소) 판결

#### 1.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자살 면책사유 해당 여부

망인은 신경정신과의원 등에서 우울 및 불안증상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그러한 정신질환이 점차 심화돼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은 아무런 유서도 남기지 않고 자살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의적인 자살이라기보다는 중한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목을 때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사고는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자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2.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면책조항의 유효 성 (무효)

① 이 사건 보험약관은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에 의한 손해의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보험금 지급책임이 면책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다. 이에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채무를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이 일관되게 설시하고 있는 법리다. 이 사건 정신질환에 의한 손 해의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보험자의 책임이 면책되다고 한 다면,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살한 경우에도 그 사망이 자유로 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묻 지 않고 무조건 보험자가 면책될 수밖에 없어 위 법리의 취지 가 완전히 몰각된다. ③「상법 제732조의 2는 「사망을 보험사 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가 보 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상법 제659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의에 의해 발생한 사고가 아닌 한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 고 있는 것. 이 사건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무조건적 으로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한다면 이는 고의가 아닌 사고까지 도 모두 면책시키는 결과가 돼 위 상법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④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 약관을 개정, 개정 약관에서는 위 면책조항을 삭제했다. 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정의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손 보사에서 주로 취급하는 상해사망보험과 생보사에서 취급하 는 생명보험은 모두 사망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것인 바. 망 인이 만일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사고에 해당된다. 더 나아가 가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돼 자살의 경위에 대해 따 져볼 필요도 없이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이 사건 상해사망보 험은 사망사고를 보험사고로 함에도 이 사건 면책조항에 따라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게 돼 자의적인 차별이 발생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상 다섯 가지 사항에 비춰 볼 때,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 면책조항을 피보험자의 자유로운의사에 기한 자살이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의 심신상실 및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를 면책으로 해석하는 한, 이는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서 무효이다.

결론적으로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 면책조항이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 로 해석하는 한 무효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을 결정한다.

### 제2심 부산고법 2015. 5. 12. 선고 2014나6814(본소) 2014나6831(반소) 판결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

### 대법원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34956 판결 (파기환송)

### 1.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자살 면책사유 해당 여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 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 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 사망 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 하는 것은 아니다.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 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가 아닌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인이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한 것은 중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는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 2.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면책조항의 유효 성 (유효)

이 사건 약관은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피보험자의 고의나 피보험자의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면책사유를 둔 취지는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식 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약화돼 상해의 위험이 현저히 증대된 경 우 그 증대된 위험이 현실화돼 발생한 손해는 보험보호의 대 상으로부터 배제하려는 데 있다.

보험에서 인수하는 위험은 보험상품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면책사유를 규정한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만일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위 면책사유에 의해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이유로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 신질환으로 인한 손해' 부분이 무효라는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파기함.

### [판례평석]

### 1.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자살 면책사유 해당 여부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여기에서의 '고의'라 함은 자신의 행위에 의해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6075 판결 등 참조). 또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피보험자에게 사망에 대한 고의나 고의에 의한 자살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끊을 것이 요구된다. 이 사건에서 망인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유서도 없는데다가 의도적으로 목숨을 끊을 만한 특별한 주위사정이 없었다. 이에 비춰볼 때, 피보험자의 고의나 자살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이에 관해서는 1, 2, 3심의 결론이 모두 같은바, 실무에서는 우울증 등정신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대체로 피보험자의 고의성을 인정하는 경향이라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이다.

### 2.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면책조항의 유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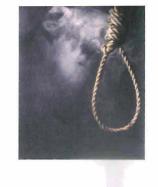
(1) 피보험자의 정신질환 면책약관이 과연 유효하다고 할 것 인지는 '정신질환 면책약관의 존재라는 형식을 중시할 것인가', 아니면 '정신질환 면책약관의 존재가 인보험 전체적인 측면에서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중시하고 이를 바로잡을 것인가'의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는 바로 보험을 바라보는 가치관의 표현으로 볼 수 있겠다.

(2) 보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것 이다.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이 익과 합리적인 기대는 보호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은 "약관 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2, 3호가 규정하는 바와 같은 약관의 내용통제원리로 작용하는 신의성 실의 원칙은 보험약관이 보험사업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 되고 보험계약자로서는 그 구체적 조항내용을 검토하거나 확 인할 충분한 기회가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계약 성 립의 과정이다"면서 "이러한 점에 비추어, 약관 작성자는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 즉 보험의 손해전보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게끔 약관조항을 작성해야 한다는 행위원칙을 가리킨다. 보통거래약관의 작성 이 아무리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해도 위와 같 은 행위원칙에 반하는 약관조항은 사적자치의 한계를 벗어나 는 것으로 법원에 의한 내용통제 즉 수정해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시했다. 즉 그러한 약관조항은 무효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3) 그런데 이 사건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면 책조항'은 이 사건 제1심 법원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존 약관조항이나 법리와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로 인해 매우 불공평하기까지 하다.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열거하고 있는 내용 외에 하나를 더 추가해 본다면, 위 면책조항에 의하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보험자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면책된다. 그러나상법 제739조는 심신상실자나 심신박약자도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상해보험에 대해서 생명보험에 관한 상법 제732조 적용 제외). 이들은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가입함과 동시에 면책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이상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이다.

(4) 금감원은 2010, 1, 29. 상해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장기 손해보험표준약관(질병·상해보 험표준약관으로 명칭 변경)을



개정했다.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면책조항 등일부 면책조항을 표준약관에서 삭제한 것. 그 이유는 바로 위면책조항이 위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5) 하지만 대상판결은 위 면책조항이 무효라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면책조항이 유효하다고 판 시했다.

대상판결은 피보험자의 정신질환 면책조항이 피보험자의 고 의나 피보험자의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돼 있 는 점을 들고 있지만, 이는 지나치게 형식논리적인 결론이다.

대상판결은 위 면책조항의 문제점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고,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본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우리 상법의 기본적인 태도는 상해보험과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자의 '고의'의 경우에만 면책되고 과실이나 중과실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입장이고(상법 제732조의2 제1항), 이에 반하는 보험약관은 모두 무효다(상해보험인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 안전띠 미착용 시 보험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보험약관은 무효라는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204808 판결 참조). 그러나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이나 정신질환으로 인해 보험사고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를 모두 면책사유로 보는 것은 그 자체로 위와 같은 상법조항에 반해 무효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이 위 면책조항을 유효라고 판 단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약자 내지 소비자보호라는 시대정 신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글\_ 박기억 변호사



박기억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4.16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상근조정위원(보험분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법무부 상법특별위원회에서 위원(보험편)으로 근무